의안번호	2210405
의 뢰 인	김남희 의원
회 답 일	2025. 5. 14.
추계번호	25C2823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	노인복지관, 경로당,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에 **급식지원**을 추가
2	법률 제20585호 안 제37조의2(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제1항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등 **노인여가복지시설에 양곡 및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**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※ (법률 제20585호 제38조의2제1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법률 제20585호 안 제37조의2(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제1항	

2. 상세 사유

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양곡 및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

- 2025년 보건복지부의 경로당에 대한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875억원 (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율 90%, 전국 68,456개소에 개소당 2,958천원 지원 반영)

○ 시·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 외에 부식비, 공공요금 등의 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

-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기준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총액은 1,690억원

○ 참고로,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585호「노인복지법」(2026.1.1. 시행 예정)은 경로당에 대한 부식 구입비 지원을 추가로 명시

❑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노인여가시설의 수와 필요 비용 규모, 노인여가시설의 필요 비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지원할 재정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함

○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, 노인복지관, 노인교실로 구성되며, 보건복지부의「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」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70,455개가 있음

[표 1] 노인여가시설 현황

(단위 : 개소)

구 분	합 계	노 인 복 지 관	경 로 당	노 인 교 실
노인여가시설	70,455	438	68,792	1,225

주: 2023년 말 기준
자료: 보건복지부,「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」

❑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